

# 재외동포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김 용 찬 (대구가톨릭대학교)  
(yongchankim@cu.ac.kr)



## 국문요약

이 글은 재외동포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의 부재 시기를 지나 1960년대부터 추진된 산업화의 맥락 속에서 재외동포정책은 태동되었고, 재외동포의 교육과 모국방문 지원으로 구체화되었다. 1990년대의 세계화와 탈냉전은 재외동포사회의 성장을 가져왔고,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었다. 문민정부는 포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했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는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를 토대로 재외동포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의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문민정부는 '신교포정책'을 수립하고, 재외동포 지원기구로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했다. 국민의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의 법제화의 결과인 <재외동포법>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참여정부에서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소외 지역 재외동포 지원사업,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재외동포의 모국정치 참여를 제도화한 재외국민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 재외동포정책들은 정책수립 이후 부분적 변화 속에서도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오고 있다.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에 기초해 재외동포정책의 결정과 시행 관련 조직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1) 이 글은 『재외동포재단 20년사』에 공동 저술한 “재외동포 이주 역사와 정책의 변천”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둘째 재외동포사회는 2세대와 3세대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 차세대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재외동포 공동체 간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외동포 중심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재외국민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참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외동포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주제어** : 재외동포,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재외국민선거제도

## I. 서론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2017년 말 기준 7백 4십만 명을 넘는 재외동포가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다. 재중동포와 재미동포가 각각 약 2백 5십만 명과 2백 4십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외교부 2018, 14).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발전은 재외동포사회의 성장, 국내외 환경의 변화, 정부의 능동적 대응 등을 통해 진행되어왔다. 재외동포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실행되었던 재외동포지원사업은 재외동포사회의 요구가 반영되기 보다는 정권의 정치, 경제적 필요와 분단의 영향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되었거나 미비했던 경우들이 많았다.

전쟁과 분단 직후 경제적 피폐와 남북한 대결, 정부의 무관심 등은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적 지원조차 미비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이후 1960년대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이주를 장려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 재외동포 모국방문사업은 재외동포의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으며,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유신독재에 대한 비판여론이 재외동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재외동포지원사업도 축소되었으며, 재외동포는 정권유지와 연장을 위한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정권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외국민선거제도 도입도 이루어졌으나 유신체제와 함께 중단되었다. 문민정부 이전 재외동포는 정부지원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정치, 경제적 필요에 따라 활용하거나 방기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세계화와 탈냉전은 재외동포사회의 성장으로 연결되었으며, 한국정부로서는 재외동포사

회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남북한 체제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거나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대상으로 국한했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와 탈냉전에 따른 재외동포사회의 성장과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자신감 등은 문민정부 시기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으로 나타났다. 이후 재외동포정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외동포사회의 요구가 결합되면서 재외동포 관련 법률 제정,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재외국민선거제도 도입 등으로 발전되어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를 토대로 재외동포정책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의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외동포정책은 한민족 정체성 강화, 거주국 적응과 모국과의 유대증진, 네트워크 강화와 모국의 정치참여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들은 재외동포사회의 요구 반영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서술하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또한 영역별 재외동포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재외동포정책을 수립과 발전 시기로 구분해 문민정부 이전 시기 재외동포지원사업과 문민정부 시기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법률 제정과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한 재외동포정책의 발전을 서술하고, 재외국민선거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향후 재외동포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 II.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재외동포정책은 문민정부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부재<sup>1)</sup>와 태동의 시기를 거쳤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대결, 산업화, 대외관계변화 등이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영역과 대상의 규정에 영향을 미쳤다. 재외동포정책의 부재 시기를 지나 1960년대부터 추진된 산업화의 맥락 속에서 재외동포정책은 태동되었고, 재외동포의 교육과 모국방문 지원으로 구체화되었다. 1990년대의 세계화와 탈냉전은 재외동포사회의 성장을 가져왔고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었다. 당시 한국정부로서는 재외동포사회의 성장과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초 위에 제한적인 재외동포지원사업을 벗어나 포괄적이고

1) 이종철(2008, 58)은 1950년대를 재외동포정책의 부재기로 규정했다.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이 필요했다.

## 1. 재외동포정책의 태동: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시작

### 1) 재외동포정책의 부재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정권의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은 재일동포로 국한되었다.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련과 중국지역에 거주하던 재외동포와 한국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재일동포에 대한 정책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대결구도와 이승만정권의 반일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이승만정권의 재일동포에 대한 시각은 재일동포를 친일파 또는 공산주의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1948년 일본공산당과 연대한 재일동포들의 ‘한신교육투쟁’과 1955년 조총련 결성, 1957년 북한의 교육원조금지원, 1959년 재일동포 북송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이승만정권이 재일동포와 북한과의 연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자유당정부는 조총련이 결성되자 전체 재일동포의 한국방문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서 자유당정부는 북한의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과 북송 등 적극적인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만을 시행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국회에서 제기한 재일동포에 대한 교육대책수립과 ‘재일교포국회홍서버’설치 등의 건의조차 묵살되었다(이용재 2015, 12-13; 최중호 2006, 171). 자유당정부는 재일동포의 한국과의 교류와 왕래가 부담이 되었다면 국회의 권고대로 재일동포에 대한 교육지원으로부터 재일동포정책을 시작해 민단지원과 북송저지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승만정권의 재일동포정책은 사실상 무대응 기조가 지속되었다.

### 2) 재외동포정책의 태동

이승만정권의 붕괴 이후 박정희정권의 재외동포지원사업은 산업화 추진, 남북한 경쟁구도, 대외관계변화 등의 요인에 기초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정권의 정당성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박정희정권으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외관계개선과 정책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산업화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재원확충과 노동력송출을 통한 외환확보 등의 노력이 전개되었다. 정권초기부터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을 통해 국내실업문제 해결과 외환확보를 위한 노동력수출을 시작했으며, 독일로 송출된 광부와 간호사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독일에 정착하거나 호주 등 제3국으로 이민을 가서 재외동포 1세대가 되었다. 또한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으로의 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일관계 정상화의 추진으로 인해 박정희정권은 재일동포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재일동포지원사업을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다.<sup>2)</sup>

박정희정권은 재일동포지원사업은 자유당정부에서 방기되었던 교육지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 일본에 한국교육문화센터를 10여개 개설했고, 교육보조비지원과 교육요원 파견 등이 진행되었다. 1970년대에는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도 재외동포교육지원이 확대되었으며, 1977년 공포된 <재외국민교육에 관한 규정>을 통해 지원확대가 이루어졌다. 한편 박정희정권은 1970년대 재외동포의 모국방문을 적극 추진했다. 모국방문사업 이전 재일동포의 한국 방문과 교류가 본격화되었고, 이를 통해 재일동포의 한국 내 기업설립과 투자가 시작되었다. 모국방문사업의 시행에는 일본 민단의 활성화와 재외동포의 한인회 설립 등으로 인한 재외동포사회의 성장, 재외동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 경제성장을 통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자신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재외동포 모국방문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975년 9월 조총련계 재일동포 추석성모단의 고향방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조총련계 재일동포 중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국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재일동포모국방문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내한이 뒷받침 되도록 했다.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방문사업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자 재일동포지원사업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1976년에는 전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해외동포모국방문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재외동포의 모국방문사업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외동포사회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와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재외동포 모국방문사업은 축소되었다(김용찬 2000, 68, 71).

박정희정권의 재외동포지원사업은 산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본격화되었다. 한일관계 정상화와 노동력수출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 교육지원, 모국방문사업과 재외동포 투자유치 등이 진행되었다. 박정희정권에서 시작된 재외동포 교육지원사업은 1960년대 재일동포교육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재외동포 대상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토요학교,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의 명칭으로 존재해온 재외동

---

2) 한일관계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반면 재일동포의 일본 내 법적지위는 변화하지 않았다. 1965년 체결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포함된 협정영주권제도는 기존과 같이 재일동포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협정>은 재일동포의 일본에서의 법적지위의 개선 없이 일본의 요구만 반영된 것으로 비판받아왔다(이용재 2015, 14). 박정희정권 시기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 중 절반 가까이가 재일동포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주된 대상이 재일동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록물의 내용은 1960년대에는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와 복송문제 등과 관련된 지시사항이 많았고, 1970년대에는 재일동포 경제인의 한국 내 재산반입과 사업, 재일동포교육과 관련된 기록들이 포함되었다(구분규 2015, 20).

포 차세대 교육기관은 재외동포사회의 중요한 한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지원 초기 외국국적동포가 설립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기관보다는 재외국민을 위한 교육기관에 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재외동포 모국방문지원사업은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3) 재외동포사회의 성장

전두환과 노태우정권 시기 재외동포정책은 재외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조항 등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쿠데타 직후 설립된 국가보위입법위원회와 제5공화국 출범 초기만 해도 재외동포정책은 정부정책의 주요과제로 주목받았지만 이후 구체화된 것은 없다. 교민청 설치나 재외동포의 국내에서의 권리확대 등이 제안되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한편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성공개최와 한민족 단결을 위한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가 민단의 제안으로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것은 재외동포사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최종호 2006, 172; 김봉섭 2009, 20-22).

전두환과 노태우정권은 재외동포문제를 통일문제와 연계하고자 했다. 1982년 재외동포의 조국방문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판문점을 통해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왕래가 진행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발표했다. 노태우정권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1988년 7월 7일 발표하면서 재외동포의 남북한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문호를 개방할 것과 해외 영주권 소지 재외동포의 북한방문 허용, 해외 거주 북한국적 동포와 공산권 거주 동포의 한국 방문 허용 등을 밝혔다(김용찬 2000, 72). 이러한 제안들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의 반영으로 독자적인 재외동포정책이라기 보다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재외동포라는 행위자를 포함한 것에 불과하다.

전두환정권은 정권초기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쿠데타와 광주항쟁의 폭력적 진압을 통한 집권으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따라서 과거 군부독재의 연장으로 전두환정권을 인식하는 재외동포사회의 비판이 국내와 해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재외동포사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주도의 지원에 중심을 두었으며, 해외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천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노태우정권 시기에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수립의지는 미약했다. 전두환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할 뿐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탈냉전이라는 대외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노태우정권의 북방정책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을 조성했다. 구체적으로 1990년 한소수교와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해 한국과의 교류가 부재했던 재중동포와 구소련지역동포들이 재외동포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의 편입으로 재외동포의 수가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와 재미동포 중심의 재외동포지원사업도 대상의 확대를 고려해야 했다.

## 2.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정립

문민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수립에는 중국과 소련과의 외교관계수립과 탈냉전으로 인해 재중동포와 구소련지역동포가 재외동포에 포함되면서 재외동포사회가 성장한 것과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착의 안정화에 따른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등이 기여했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과 탈냉전으로 인해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무의해진 상황에서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거주지역과 계층 등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출범한 문민정부는 과거 정권과 달리 재외동포로부터 정권 정통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다. 이를 기반으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고, 재외동포사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문민정부에서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은 과거와 달리 재외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과 목표, 방향, 계획, 기구설치 등을 포함하는 체계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존 교민정책이 정권의 정통성문제로 인해 교포사회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왔으며, 이는 교포사회의 양분과 거주국에서의 사회적 위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포들이 거주국에 잘 적응하고 교포사회 내 대결을 지양하도록 하며, 정부의 지원은 교포의 자조노력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과 모국에서 경제활동을 권장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김봉섭 2009, 25-26). 문민정부의 '신교포정책'은 정책목표를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적응을 지원하고 모국과의 정신적 유대의 강화로 제시했다.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문민정부에서는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교민청의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교민청을 대신해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었다(윤인진 2013, 6).

재외동포재단 설립에 앞서 문민정부는 1996년 2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와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의 조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sup>3)</sup> 1996년 5월 개최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시작으로 문민정부 시기 총 세 차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은 자조노력 지원, 거주지 발전에 기여와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언어·전통·문화·예술 차원의 지원, 자유·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재외동포사회 발전 지원, 거주국 내 법적·사회적 지위향상 지원, 한국 내 투자 등 경제활동 장려 및 재산권 행사 등 이익보호를 위한 국내법 및 제도 개선 등이었다. 주요하게 다루어진 논의 주제들은 재외동포교육과 재외동포재단 설립 및 사업추진 계획 등이었다(김봉섭 2009, 26).

한편 1997년 3월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의 목적을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으로 표명하고 있다. 또한 재단이 수행하는 주요사업에는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재외동포를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재외동포 인정 기준으로 “한민족의 혈통”으로 제기하고 있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당시 외무부로 주요사안의 경우 외무부장관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했다.<sup>4)</sup>

문민정부에서의 재외동포정책은 과거와 달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이 이루어졌다. 우선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었으며, 또한 재외동포정책의 목표도 제시되었다. 거주국 적응 지원과 한민족 정체성 강화,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등의 목표는 이후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표명되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와 재외동포재단 설립은 과거 정권에서 부재했던 정책결정과 시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의 신설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와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되었다. 우선 재중동포와 구소련지역 동포가 재외동포사회에 포함됨으로써 재외동포의 수가 대규모로 증가한 만큼 재외동포의 한국 방문과 정착, 고용 등 고려해야 할 새로운 이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재외동포사회에서 요구했던 교민청이 재외동포재단으로 대체된 것과 재외동포재단이 외무부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모국에 대한 기여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3) 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검색.

4) 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재외동포재단법> 검색.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으며,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구축과 재외동포 차세대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은 문민정부 이후 정부들의 재외동포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재외동포정책은 수립 이후 발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 Ⅲ. 재외동포정책의 발전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이후 재외동포정책은 법제화, 재외동포 초국가적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의 국내참여 확대, 소외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등으로 발전되어왔다.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이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고용, 재외동포정책대상 확대, 국내문제 참여요구 등 제기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모국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정책도입이 요구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 대응의 결과가 재외동포정책의 발전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의 목표로 거주국 내의 성장 지원,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지원, 재외동포 역량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된 지원정책의 방향은 거주국에서의 권익보호와 자조노력 지원, 한글학교 지원 확대 및 문화행사 지원,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장려, 국내법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외동포 인재 활용 등으로 제기되었다. 국민의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는 문민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계승하면서도 재외동포의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재외동포 인재활용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직면한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즉 재외동포의 경제적 기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가 <재외동포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구체화되었다(전재호 2008, 112).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3대 기본목표와 6개 주요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거주국 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동포 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호혜적 발전으로 목표가 제시되었다. 주요 방향에는 거주국 내 정착을 위한 자조노력 지원,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지원, 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문화사업 지원,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모국과 거주국 간 우호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참여정부 시기 재외동포정책 관련 제도와 기구가 활성화되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6년 만에 2004년 다시 개최되었고,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영사국은 재외동포영사국으로 개편되었으며 영사국 내 조직도 3개 과에서 5개과로 확대 개편되었다(이용수 2006, 105-106; 이병훈 2007, 367). 국민의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활용하고자 했던 부분은 경제회복과 함께 변경했다. 새롭게 제기된 정책방향은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과 모국과 거주국 간 관계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다. 재외동포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발전을 반영해 유대인과 화교 등이 구축한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재외동포사회에서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재외동포 인재육성과 활용은 국내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거주국과의 관계증진에 중심이 맞추어졌다.

이명박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는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호혜적 발전을 목표로 네 개의 추진방향이 제시되었다.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전략적 기여 확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한인 정체성 및 자긍심 고양을 위한 교육·문화 교류 확대 등이다. 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는 재외국민선거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외에도 방문취업제도 보완,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추진과 국적법 개정안 시행 등이 진행되었다(윤인진 2013, 7). 이명박정부에서는 역대 정부들의 재외동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계승하면서도 특히 모국과 재외동포와의 유대강화의 일환으로 국내정치참여를 적극 추진했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논의는 이명박정부 이전에도 제기되었지만 이명박정부에서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재외동포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맞춤형 동포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모국 발전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 확대, 특화된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간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역사교실 운영,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민원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등도 지원방안으로 제기되었다. 2014년에는 통일 대비 재외동포사회 역량강화 및 기여전략을 재외동포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확정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통일교육과 지지기반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3/07/0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4/10/01). 박근혜정부에서는 맞춤형 동포서비스를 새롭게 제기했다. 재외동포사회의 성장 수준과 거주국의 환경 차이 등을 반영해 맞춤형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와 기존 정책의 평가에 기초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맞춤형 서비스는 자칫하면 재외동포정책의 개선보다는 관주도의 현상유지사업으로 제한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 또한 2014년 제1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주요 방향으로 제기된 통일 대비 재외동포사회 역량 강화는 이후 정책의 구체화나 추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것은 재외동

포정책의 결정과 시행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아래에서는 재외동포정책의 발전을 영역별로 고찰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외동포정책의 법제화의 결과인 <재외동포법>의 제정, 이후 개정 배경 및 내용, 재외동포정책의 결정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변화 등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과 소외지역 재외동포 지원사업 등을 살펴보고 있다. 셋째 재외동포의 모국정치 참여를 제도화한 재외국민선거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재외동포정책들은 정책수립 이후 부분적 변화 속에서도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오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이 정치적 고려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것이 아닌 재외동포사회의 요구, 국내외 환경변화, 정부의 적극적 대응 등이 결합되어 수립되고 시행되어왔기 때문이다.

## 1. 재외동포법의 제정과 개정

1999년 9월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전자를 재외국민으로 후자를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이들을 재외동포에 포함시켰다. 재외동포의 체류상한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위해 부동산,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등을 국내인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sup>5)</sup>

<재외동포법> 제정에 대한 반응은 상이하게 나타났다.<sup>6)</sup> 재미동포들은 미국국적을 취득 하더라도 한국과의 사업에서 불이익이 없게 되면서 미국 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해졌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재일동포들은 외국국적동포와 분리해 자신들을 대우하는 ‘재외국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가장 큰 반대는 중국동포에게서 제기되었다.<sup>7)</sup> 재중동포의

5) 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재외동포법> 검색.

6) 국내에서는 <재외동포법>이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고 민족주의에 의해 한민족에 우대정책을 펴는 차별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서 혈통에 기초해 국적상실 동포를 적용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인섭 2003, 213-214).

7) <재외동포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취업, 주변국의 반응, 노동시장변화 등의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이들 이슈들은 주로 재중동포의 국내취업과 중국정부의 <재외동포법> 제정에 대한 의견 등을 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이진

경우 중국정부의 우려 등이 반영되어 당초 법안과 달리 재외동포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결국 중국동포가 1999년 평등권 침해 사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01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재외동포법과 시행령의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고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다.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는 이후 참여정부 시기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는 문구로 변경되어 2004년 3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재외동포 정의의 변경으로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도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전재호 2008, 114-115).

국민의 정부 시기 제기된 ‘재외동포기본법’에 관한 논의는 참여정부 시기에도 진행되었다. 당시 정부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즉 기본법은 혈통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 소지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재외동포법〉을 통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 경제활동 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견해를 유지했다(이용수 2006, 111-112). 이후 기본법에 관한 논의는 다시 부각되지 못했다. 〈재외동포재단법〉에서 재외동포의 요건에 “한민족의 혈통”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재외동포법〉에서는 혈연적 관계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재외동포법〉 제정 시 제기되었던 혈연에 근거한 한민족 정체성 정의문제를 피해하고자 했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유명무실화 되었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활동이 참여정부에서 활성화되었다. 문민정부 시기 세 차례 진행되었던 위원회 회의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6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즉 2008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는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이 위원회의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되었다.<sup>8)</sup> 기존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수립 단위가 명시적이지 않은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다양한 정부부처가 재외동포정책의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 정책목표로 제시되어왔지만 규정상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누락되었던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강화 이슈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주요사안으로 포함시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2.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과 소외지역 재외동포 지원

영 2002).

8) 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검색.

참여정부에서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2005년 개최된 제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세계한상대회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향후 추진방향이 제시되었다. 회의에서는 세계한상대회가 재외동포 경제인과 모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재외동포 경제인 간의 협력 확대에 기여해왔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부족과 재외동포 경제인의 자발적 참여가 미비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한상네트워크<sup>9)</sup>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과 차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한상대회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총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05/12/14).

이러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결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 간 네트워크와 동포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지원들이 시행되었다. 우선 모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재외동포 상호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korean.net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DB구축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외동포 경제인 및 국내외 경제인 간 교류 촉진을 위해 세계한상대회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 간 비즈니스 교류 증진, 한국기업의 수출 확대, 재외동포의 재투자 활성화 등을 달성하고자 했다. 해외한인무역인 네트워크인 OKTA(Overseas Korean Trade Association)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의 경제적 기반 강화와 재외동포 차세대의 모국 이해와 경제 마인드 제고를 추진했다. 한민족 IT 네트워크 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한인 IT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인 KIN(Korean IT Network)의 세미나와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했다. 그리고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했으며, 행사는 연 1회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의 구축이 이루어졌다. 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는 정부 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재외동포 과학자 간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 벤처인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로 현실화 되었고 정기 컨퍼런스 형태로 운영되었다(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2006, 27-30;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08/08/21).

---

9) 한상네트워크는 온오프라인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무역과 금융거래를 하는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의미한다. 오프라인의 대표적 활동은 세계한상대회로 2002년 10월 서울에서 제1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세계한상대회에 대한 준비는 1998년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국내외 동포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진행된 '코리아경제네트워크'구축에 대한 결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한상대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korean.net'과 '한상 넷'으로 나타났다(임채완 2005, 8-9).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에서 진행한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를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와 한계가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된 것은 한상네트워크와 온라인 상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등을 통한 무역증진과 정보교류 등의 활성화이다.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무역계약액의 경우 2006년 1,200만 달러에서 2007년 6,300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를 통한 정보교류도 2003년 1,929건에서 2007년 52,62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벤처, IT, 여성 등의 분야별 온라인과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한계로는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요구반영 미흡과 금융·법률·의료·농업 분야 등의 직능별 교류협력의 미구축 등이 지적되었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정책의 조정·통합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국무총리실 보도자료 08/08/21).<sup>10)</sup>

한편 참여정부에서는 모국과 재외동포 간 네트워크 강화와 국내에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세계한인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제정했다.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의 관심을 알리고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10월 5일 제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기념식에서는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들에게 훈포상이 수여되었다. 당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세계한인 주간행사에는 재외동포정책 세미나, 어울림 한마당, 웅변대회, 코리안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외교통상부 보도자료 07/10/04).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된 소외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내 출입국과 취업에 대한 지원과 거주국 정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정책의 대상은 재미·재일동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재중동포와 구소련지역동포이었다. 재중동포와 구소련지역동포의 출입국과 취업에 관한 차별을 없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방문취업제도이다. 또한 거주국 정착 지원, 한민족 정체성 유지 지원, 모국방문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방문취업제도의 활용은 재중동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소외지역 정주동포 지원사업은 구소련지역 동포에 집중되었다. 특히 참여정부는 고려인으로 통칭되는 CIS국가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다.

방문취업제도는 2007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재미·재일동포에 비해 출입국과 체류활동 범위 등에서 소외받아 온 재중동포와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외동포의 모국 왕래 및 취업확대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중국과 구소련지역

10)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와 구축이 하향식으로 진행되면서 구축 초기 재외동포조직의 발전 단계의 상이함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재외동포사회가 대상화 될 수 있는 한계를 노정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임채완 2007, 39-40).

동포들의 모국방문을 쉽게 하고 취업을 희망할 경우 단순노무분야에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었다. 이를 위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연고가 있는 동포는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연고동포는 연간 허용인원을 설정해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지역 동포의 경우 한국어시험 및 추첨을 통해 선발했고, CIS국가 동포는 추첨으로 인원을 선발했다. 연간 허용인원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시장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방문취업제도는 기존 특례고용허가제에 비해 연고가 없는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을 허용했고, 허용업종에 서비스업도 추가했던 점에서 차별성을 가졌다(법무부 2007).

방문취업제도 시행 이전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외동포의 국내취업을 관리했다. 고용허가제 아래서 연고가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반면, 무연고동포의 경우 산업연수생 신분의 재외동포를 제외하고는 혜택이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중동포의 경우 연고를 찾거나 서류작업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했고, 무연고동포의 경우 위장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재외동포 고용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불법취업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참여정부에서는 출입국과 취업 조건을 대폭 자유화하는 방문취업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곽재석 2012, 39-41).

이명박정부에서는 방문취업제도로 인해 국내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의 취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방문취업제도를 통한 입국인원을 축소하고, 내국인으로 대체가능한 업종의 재외동포 취업을 제한하고자 했다. 내국인 취업기피 지역 및 업종에 재외동포가 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영주자격 취득기회 부여 등이 제안되었다. 2012년에도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농축어업 분야로의 재외동포의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교육 및 재입국기간 단축 등이 검토되었다(국무총리실 보도자료 09/02/05; 국무총리실보도자료 12/02/08).<sup>11)</sup> 한편 2016년 2월부터 방문취업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6/05/09).

소외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1990년대 사할린동포의 귀국정책으로부터 태동되었다. 1988년 소련정부의 사할린동포의 모국방문과 영주귀국에 대한 허용으로 1989년 사할린

---

11) 2009년 3월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에 방문취업 체류자격 재외동포들이 취업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곽재석 2012, 42).

동포의 모국방문사업이 추진되었다. 1994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 시범사업에 대한 합의 후 거주 아파트와 요양원이 완공됨에 따라 2000년 816명, 2001년 178명의 사할린동포가 귀국하였다. 이후 정체에 빠졌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은 참여정부 시기 실태조사과정을 거쳐 2007년 재개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611명, 2008년 647명, 2009년 837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를 위해 귀국하였다(윤인진·김희상 2016, 61-62).

참여정부는 선진국 거주 재외동포 중심 지원정책에서 중국과 구소련지역동포 등 소외지역 재외동포까지 포함하는 지원정책의 변화를 추진했다. 특히 러시아·CIS지역 동포들의 경우 강제이주와 사회주의체제 붕괴 등의 상황에서 거주국에서 안정된 생활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진행했다. 무국적자 신분이 된 구소련지역동포에 대한 법률자문, 고려인 3-4세에 대한 민족교육지원, 모국연수 및 유학기회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고려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안정 방안으로 농경사업 지원과 투자 등이 검토되었다(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2006, 20).

구체적인 지원결정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5년 개최된 제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재외동포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한민족 정체성과 문화 유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CIS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한국어교육, 국내초청 유학 및 연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구체적 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05/12/14). 제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에 구소련지역동포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러시아·CIS지역 재외동포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했다. 또한 2006년부터 2008년을 정부의 구소련지역동포에 대한 중점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한국어교육기회 확대, 초청연수 및 유학 확대, 민족문화정체성 유지 지원, 국내취업기회 확대, 현지 정착 활동 지원 등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이용수 2006, 109). 한편 제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CIS지역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국적취득 사업과 고려인동포 중앙아시아 정주 70주년 기념사업 지원을 2007년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06/12/26).

고려인동포 재정착지원사업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이명박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2007년 8월 지급되기 시작한 재정착지원금은 2008년과 2011년 사이에는 매년 12억이 집행되었다. 재정착지원사업은 주로 고려인동포의 농업발전에 중점이 두어졌다. 고려인동포 밀집지역에 시범영농단지과 영농기술센터 등을 조성하고 농업전문가 파견을 통해 선진영농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이병조 2013, 72-73).



### 3. 재외국민선거제도의 시행

재외국민 참정권은 이미 1966년 베트남전쟁 참전군인과 해외근로자의 해외부재자투표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 및 제7대 국회의원선거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및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가 시행되었다. 1967년 대통령선거 시 해외부재자투표의 89%가 베트남 파병군인들로 나타나 당시 해외부재자투표가 박정희정권의 선거승리를 위한 의도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황상석·김형기 2010, 176-177). 이후 1972년 유신체제의 시작과 함께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제한되었다. 1997년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결정했다. 2004년 재일동포와 2005년 재미동포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박채순 2008, 136, 140).

여야 정당은 재외동포 선거권자의 범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의 경우 우선 해외 단기체류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고, 야당의 경우 외국거주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전면적 도입을 제기했다. 여야 정당은 각자 선거에서 득표에 유리한 방안을 우선시했다. 결론적으로 현재가 주민등록 소지여부에 따라 선거권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선거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김제완 2008, 169-170).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보장되었다. 당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2009년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빠져있었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권은 2011년 11월 선거구에 거소를 두고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올라있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도록 개정되었다. 2015년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반영해 선거권 부여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명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선거구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sup>12)</sup>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국민선거가

12) 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main.html>),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검색.

실시되었다. 당시 선거에는 재외국민 56,456명이 투표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는 등록한 15만 4,217명 중 6만 3,797명이 참여했다.<sup>13)</sup> 투표참여의 증가는 영구명부제 도입과 인터넷을 통한 신고와 신청 확대, 추가 투표소 운영 등의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대통령선거의 투표참여는 대폭 증가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15만 8,225명이 투표했고,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사상 최대인 22만 1,98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투표 등록 재외국민 중 75.3%가 투표에 참여해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16/04/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17/05/01). 이러한 결과는 비례대표제 투표에 국한된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대통령선거는 재외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19대 총선의 재외국민선거 시행 이후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국내인과 동일하게 영구명부제를 도입해 선거마다 재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신청 방법의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추가투표소 설치, 우편투표제도 도입, 귀국투표허용, 인터넷 투표 등의 방안이 제기되었다. 영구명부제의 경우 출입국관리명부를 통한 직권방식의 영구명부제 도입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홍보와 선거운동의 다양화도 제시되었다(정태희 2014, 94; 박범중 2016, 525-528). 이러한 요구들 중 일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반영되었다. 연속 불참 시 명부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지만 1회 등록으로 추가적인 등록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 도입으로 등록 방법의 확대도 진행되었다. 또한 투표소의 추가 확대도 재외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시행되었다.

## IV. 결론: 재외동포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

재외동포정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들이 결합되면서 발전되어왔다. 즉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을 시작으로 재외동포재단 설립과 운영, <재외동포법>의 시행,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과 소외지역 재외동포 지원, 재외국민선거제도 시행 등의 정책수립과 실행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들이 연계된 결과이다. 한편 재외동포정

13) 제19대 총선의 재외선거인 수는 약 2백 2십만 명으로 예상되었다. 예상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2.53%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낮은 투표율로 인해 선거 직후 고비용 저효율 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무용론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당시 낮은 참여에 대한 원인으로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 편의성이 지적되었다(김종범 2012, 484-486).

책은 지속성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민족 정체성 증진을 위한 한국어와 문화교육 지원사업은 규모에 있어 차이가 존재했을 뿐 계속되어온 재외동포정책의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정책의 발전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증진과 모국과의 유대강화, 재외동포사회 지원과 재외동포의 모국기여 확대 등의 영역에서 지속성과 변화, 우선순위의 재정립 등을 통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과정에 기초가 된 것은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들이다.

재외동포정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들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들에는 재외동포사회가 가지는 보편적 요구들이 존재하고, 또한 지역 및 국가별 특수성에 기초한 요구들이 실재한다. 보편적 요구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함께 지역 및 국가별 재외동포사회의 특수한 요구들에 대한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우선 지역 및 국가별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들이 아닌 재외동포사회의 보편적 요구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재외동포사회와 학계에서는 정책결정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지원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통합한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전담하는 단일기구의 설립을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사회는 오래전부터 교민청 또는 동포청을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동포청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외교문제 등을 이유로 한 정부의 반대로 현재까지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또는 청의 설치 등 재외동포정책 책임부서에 관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학계에서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내실화와 동포·이민청의 설립제안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윤인진 2013; 임채완 2017). 동포청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제기는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수립을 통해 재외동포사회 발전의 반영과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있는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기초한 것이다. 다문화정책의 결정과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어온 것처럼 재외동포정책의 결정과 시행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과 시행 단위를 통합할 것인가 또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 정책의 결정과 조정기구를 대통령 산하로 할 것인가 또는 현행을 유지할 것인가, 재외동포재단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논의를 위해서는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모국과의 유대증진에 따른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모국기여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또는 한민족 정체성 증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연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재외동포사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재외동포 2세대와 3세대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재외동포

차세대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유럽의 조사에 따르면 주류사회의 이민 2세대에 대한 호감도가 1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Mayer 2016, 51). 이것은 이민 2세대가 1세대에 비해 주류사회로의 동화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차세대도 1세대에 비해 거주국 주류사회로의 편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민족 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재외동포 차세대정책은 참여정부시기부터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강화되어왔다.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차세대정책의 재정립을 통해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내 성장과 함께 거주국과 모국과의 관계 증진과 모국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사회의 ‘올드커머’와 ‘뉴커머’처럼 이민과 성장배경이 다른 재외동포집단에 대한 지원정책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민동기, 거주국에서의 생활패턴, 한국과의 유대정도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자칫 재외동포사회의 이질적 집단이 구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아우르면서도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한 요건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한국의 지원중심에서 벗어나 재외동포 중심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가령 해외 유대인의 경우 자신들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재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타국 거주 유대인을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해외 유대인 중심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왔다. 다양한 재외동포 네트워크들이 구축되도록 지원한 성과를 토대로 향후 재외동포 네트워크는 재외동포의 적극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지원을 지속해야겠지만 재외동포사회의 독립적 운영과 모국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지향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차세대정책이 중요하다. 차세대동포의 모국과의 유대강화에 주안점이 두어진 현재 정책을 지역과 국가별 차세대동포 간 유대강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재외국민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참여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사회는 선거참여의 편의증진과 정보제공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재외국민선거제도 도입 이후 영구명부제 도입, 인터넷 활용확대, 투표소 확대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요구를 반영해왔다. 향후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재외국민 대상 선거캠페인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정당의 선거캠페인 확대는 재외동포의 선거참여와 활동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외국국적동포의 선거참여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선거권에 대한 검토가 논의 과정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처럼 재외동포를 위한 국회 의석배정에 관한 논의의 시작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의 기여와 모국과

의 유대강화를 목표로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회 내 재외동포 의석배정 등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재외동포의 정치참여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의 이러한 요구들을 기초로 중장기적 정책수립과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재외동포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정책수립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시행에 대한 평가가 해당 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재외동포정책은 대통령선거 공약을 기초로 정부부서나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시행부서를 통해 집행되는 양상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권출범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이 제시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따라서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전담할 책임부서가 명확해져야 하고, 정책수립과 평가는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와 한국의 상황, 정권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검토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평가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정책변화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외동포사회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변화 요구는 평가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과 시행, 평가 등은 백서형태로 발간되어 정책의 지속성과 발전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등장하는 범저는 “대부의 집을 번창시킬 인재는 나란 안에서 찾고, 제후의 나라를 번창시킬 인재는 천하에서 찾는다”라고 간언한다(사마천 2016, 462). 재외동포를 모국발전을 위한 존재로만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세계화시대에 700만이 넘는 재외동포는 거주국과 모국과의 관계 증진과 모국 및 전 세계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인 것은 분명하다.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 성공적으로 적응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재외동포와 모국, 거주국과 모국, 재외동포 간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과정을 통해 재외동포는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부. 2007. 외국국적동포 포용을 위한 방문취업제도.
- 사마천. 2016. 김원중 역. 사기열전1. 민음사.
- 외교부. 2018. 재외동포현황 2017.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2006.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 광재석. 2012. 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과제. 다문화사회연구 5(1), 33-73.
- 구분규. 2015. 대통령 기록물에 나타난 재외한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재외한인의 본국 사회 참여. 아태연구 22(3), 5-46.
- 김봉섭. 2009. 한국 재외동포 정책 10년의 회고와 전망. 민족연구 37, 6-71.
- 김용찬. 2000. 남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5, 62-76.
- 김제완. 2008. 재외국민 참정권 선거법을 둘러싼 현단계의 주요쟁점과 여야 3당안 비교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69-198.
- 김종범. 2012.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제19대 총선사례에 대한 재외국민선거제도 비교연구. 한국유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483-501.
- 박범중. 2016. 재외국민선거의 의의와 투표율 향상 방안. 한국민족문화 61, 505-531.
- 박채순. 2008.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재외국민참정권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5-152.
- 윤인진. 2013. 재외동포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의 재정립. 민족연구 54, 4-21.
- 윤인진·김희상. 2016. 재외동포 귀환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현황. 한국민족문화 60, 37-81.
- 이병조. 2013.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사회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민족연구 54, 64-93.
- 이병훈. 2007.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현상과 과제. 고려법학 제48권, 357-384.
- 이용수. 2006.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105-118.
- 이용재. 2015.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과정과 과제. 민족연구 61, 4-25.
- 이종철. 2008. 재외동포정책 비교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5-73.
- 이진영. 2002.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과 국제정치 18(4), 133-162.

- 임채완. 2005. 세계한상의 규모와 네트워크 분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17.
- 임채완. 2007. 세계화 시대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초국가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3-44.
- 임채완. 2017. 동포·이민청 설립: 정책과 법제화.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3-19.
- 전재호. 2008. 세계화 시기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쟁점과 대안. 한국과 국제정치 24(2), 99-134.
- 정인섭. 2003. 유럽의 해외동포 법적지위의 검토: 한국의 재외동포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48(2), 189-217.
- 정태희. 2014. 재외국민의 투표참여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4-97.
- 최종호. 2006. 역대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27, 167-181.
- 황상석·김형기. 2010. 재외국민 선거의 합리적 관리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74-189.
- Mayer, Nonna. 2016. Immigrants and politics in France. 민족연구 68, 44-61.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05. 12. 14. 정부, CIS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제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06. 12. 26. 정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키로: 제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3. 7. 9. 정부,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준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2013년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 발표.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4. 10. 1. 정부, 통일에 대비해 재외동포사회 역량 높인다: 제1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열어 ‘통일 대비 재외동포사회 역량강화 및 기여전략’ 확정.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6. 5. 9. 재외동포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 및 한국어 교육 강화.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8. 8. 21. 재외동포정책의 전략적 통합·조정 강화: 국무총리실,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 실태 평가 결과.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9. 2. 5. 적극적 네트워크를 통한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성장동력으로: 한 총리 주재로 제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신정부 출범 후 첫 개최.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2. 2. 8. 온라인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 완성: 제13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7. 10. 4. 제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6. 4. 5. 제20대 국선 재외투표 총 6만 3,797명 참여, 투표율 4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7. 5. 1. 대선 재외투표 역대 최다 221,981명 참여, 투표율 75.3%.
-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 투고일: 2018.07.23. ● 심사일: 2018.07.24. ● 게재확정일: 2018.08.06.



## The Historical Review and Suggestions of Overseas Koreans Policy

Kim, Yongchan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overseas Koreans policy and to make suggestions for the advancement of overseas Koreans policy. There had been programs of education and home country visiting for overseas Koreans in the 1960s and 1970s. In the circumstances of globalization and the Post-Cold War, the Korean government had established comprehensive overseas Koreans policy and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in the 1990s. The next Korean governments enacted the law on overseas Koreans, supported the formation of overseas Koreans network and expanded job opportunity for overseas Koreans. The overseas Koreans election also has been enforced. This research presents suggestions for development of overseas Koreans policy. First, there will be the reexamination of organizations and effectiveness in regard to overseas Korean policy. Second, the establishment of new policy on the young overseas Koreans is needed. Third, transnational networks by overseas Koreans have to be extended and strengthened. Fourth, the overseas Koreans election system need to be revised on the basis of overseas Koreans claims. Fifth, there need to form long term overseas Koreans policy and establish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of the policy.

〈Key words〉 Overseas Koreans, Overseas Koreans Policy, Young Overseas Koreans, Overseas Koreans Networks, Overseas Koreans Election